

이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

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(안)이 2002년7월 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,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읍.면.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,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부문 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임.

2. 주요골자

가. 주민자치센터 관련 부문

-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"000읍.면.동 주민자치센터"로 통일(안 제4조)
- 지역사회진흥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(안 제5조)
-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를 소속공무원, 위원, 자원봉사자 등이 분담 수행(안 제7조)
-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(안 제7조)
- 사용료는 읍.면.동장이,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 요율, 감면, 정수, 관리, 집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-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가입(안 제11조)

나.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부문

- 위원회의 일부 의결. 집행기능 부여(안 제15조)
-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도입(안 제17조)
- 각급 기관.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 위촉(안 제17조)
- 각 분야별 균형(분야별 1/3이상 초과 금지)있는 위원 위촉(안 제17조)
-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 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, 위원의 주요인적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(안 제17조)
-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무화(안 제18조)
- 고문을 포함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(안 제20조)
- 위원회의 회의 소집 권한 위원장에게 부여(안 제21조)
- 고문 및 읍.면.동장은 발언 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갖지 아니함(안 제21조)

3. 법적근거

- 행자부 1.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(2002.3.15)에 의거 개정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정부의 읍.면.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제52차 임시회에서 의결 공포 시행된 조례로서, 그동안 시범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해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도입과 자치센터설치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보완하고 또한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요건 위촉과 해촉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시의원 당연직 고문 제도를 도입하면서, 읍.면.동장이

위촉 및 해촉 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제5항과 안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시의원을 읍.면.동장이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,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〈수정을 요하는 조문〉

1.안 제17조 제5항

“고문은 읍.면.동장이 위촉하되”를 “당연직 고문은 읍.면.동장이 추대하되”로 하고,

2.안 제20조 제1항

“해촉할 수 있다”를 “추대를 해지할 수 있다”로 수정